관세청「혁신 프리미어 1000」지원기업 선정 공고

중견·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금융 및 비금융 프로그램 「혁신 프리미어 1000」의 관세행정 분야 기업지원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2월 10일 관 세 청 장

1. 사업 목적

○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 회복,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성·미래 성장 가능성을 갖춘 혁신기업을 선정하여 금융·비금융 종합지원을 제공

2. 지원 대상

- o (필수)「혁신성장 공동기준 6차」해당하는 품목을 영위하는 중소·중견 기업
- o (우대) 「5대 중점전략분야」에 해당하는 중소·중견기업
- ※ 각 품목은 [별표 1] '혁신성장 공동기준 6차 품목 리스트와 [별표 2] 「5대 중점전략분야」참조

3. 관련 법령

- ㅇ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18조의2(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)
- ㅇ 「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11조(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)
- ㅇ「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」

4. 지원 내용 및 특전 사항

○ (금융지원)「혁신 프리미어 1000」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에서 전용 상품을 신설하는 등 최고 수준의 우대 혜택 지원

정책금융기관	지원 내용		
산업은행	 ▶ 전용상품 사용시 대출 금리 최대 △0.9%p(원화 기준) 감면 ▶ 기존 운영자금 대출한도 우대 ▶ 내부평가 실적집계 가중치 부여 		

정책금융기관	지원 내용		
수출입은행	 ► 대출 금리 최대 △1.0%p 감면 ► 대출시 수출 자금의 경우 수출실적의 100% 이내로 한도 확대 (기존 50~90% → 선정기업에 한해 100%로 확대) ► 보증시 보증료율 최대 △0.3%p 감면 		
기업은행	 다출 금리 최대 △1.3%p 감면 다출시 시설 자금의 경우 소요자금의 90%로 한도 확대 (기존 80% → 선정기업에 한해 90%로 확대) 		
신용보증기금	 보증비율 95% 확대 (기존 평균 85%에서「혁신 프리미어 1000」선정기업은 95%로 확대 기업별 보증한도 최고 150억원으로 적용 (기존 최고한도 100억원 → 선정기업에 한해 최고한도 150억원으로 혹 운전자금 한도를 추정 매출액의 1/4 ~ 1/2로 확대 (기존 추정 매출액의 1/6~1/3 → 선정기업에 한해 추정 매출액의 ~ 1/2 확대) ※ 5억원 이하 한도사정 생략 		
 보증비율 95% 확대 (기존 평균 85% 수준 → 선정기업에 한해 95%로 확대) 기업별 보증한도를 최고 200억원 적용 (기존 100억원 수준 → 선정기업에 한해 200억원으로 확대) 30억원 이하의 운전자금 한도를 추정 매출액의 1/2로 확대 (기존 추정 매출액의 1/4~1/3 → 선정기업에 한해 추정 매출액의 1/※ 5억원 이하 한도사정 생략 			

○ (비금융 지원) 6개 정책금융기관 전체 프로그램 및「혁신 프리미어 1000」사업 각 참여부처의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선정기업에 특전 부여 예정

정책금융지원관	지원 내용		
산업은행	 ▶ 민간투자 유치 - (KDB NextRound) 스타트업-VC 연결을 위한 투자유치 플랫폼 * 정규 라운드(매주 3회), 스페셜 라운드(연 10회 내외) ▶ 스타트업 Fair - (NextRise) 1:1 밋업, 부스전시 등 글로벌 스타트업 Fair (연 1회) 		
기업은행	 ▶ 컨설팅 - (IBK 컨설팅) 중소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분야별 맞춤 컨설팅 * 분야 : 기업승계, 세무·회계, 경영, 인사·조직, 노무, ESG 등 ▶ 해외판로 개척지원 - (IBK Trade Club) 해외시장 진출 또는 해외 거래처 발굴 희망 기업에 글로벌 제휴은행의 기업고객과 거래 매칭 		
수출입은행	 ▶ 해외판로 개척지원 - (해외사업개발 지원 플랫폼) 해외사업 발굴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조사 및 입찰 관련 용역비용 지원 		

정책금융지원관	지원 내용		
신용보증기금	 ▶ 민간투자 유치 - (U-CONNECT) 사업개시 후 7년 이내 유망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온 ·오프라인 민간투자유치 플랫폼 ▶ 컨설팅 - (기술컨설팅) 권여별 공항컨설팅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기술형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사항 해결 지원 		
기술보증기금	▶ 컨설팅 - (기술경영 컨설팅) 경영 및 기술현황 등에 대한 전문가 진단 및 개선		
성장금융	▶ 민간투자 유치 - (핀테크위크) Reverse IR, 핀테크 스타트업 1:1 투자밋업 - (혁신성장/뉴딜 투자설명회) 혁신성장 뉴딜펀드 위탁 운용사와 기업 매칭		

- ※ 선정된 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의 담당기관이 기업은행으로 배정되더라도 정책금융기관의 전체 비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예정
- ○「혁신 프리미어 1000」최종 선정기업은 관세청의「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」 우대 선정, YES FTA 전문교육(무료), 공익관세사의 통관상담 서비스 등 제공
- ㅇ 관세청 「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」 지원사업에 참여* 기회 제공
- * 단, 「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」의 각 지원사업별 일정 조건 충족 시 지원 가능
- ㅇ 정책금융지원반의 최종 선정 후「혁신 프리미어 1000」관세 분야 확인증 발급

5. 지원 기간

- 선정 시 ~ 익년 말 (금번 선정시, '26년말까지 지원)
- ※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으로 선정되더라도, 여신심사 결과 등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

6. 신청 자격 등

□ 신청 자격

- (공통 요건) 혁신성·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¹)·중견기업²)으로서 금융지원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
- (적극 요건)「혁신성장 공동기준 6차」에 해당하는 품목을 영위 중인 기업 으로서 다음 각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

^{1) &#}x27;중소기업'이란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 및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 범위)에 따른 기업 2) '중견기업'이란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 제1호의 기업

구분	내용	비고		
기본요건	▶ 「혁신성장 공동기준 6차」의 240개 품목 영위 중인 중소·중견 기업 ※ [별표 1] 「혁신성장 공동기준 6차」 품목 목록 참조	필수		
기는표신	▶「5대 중점전략분야」에 해당하는 중소·중견 기업 ※ [별표 2]「5대 중점전략분야」품목 참조	우대		
혁신성	▶ 최근 2년 이내 '적격 투자기관*'으로부터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 * 적격 투자기관 : 「벤처기업육성특별법」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(1)~(7)에 해당하는 기관 (한국 벤처투자, 은행, 신·기보 등)			
성장성	▶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기업 중 최근 3년 매출액, 상시근로자 고용 연평균 20% 이상 증가 기업	최소 1개 이상 해당		
관세행정 분야	▶ [별표 3] 관세행정 분야 세부기준 참조관세행정 분야※ ① 수출입제조·물류 보세산업 분야, ② 수출입 통관·조사·감시 분야, ③ FTA활용 분야, ④ 수출입안전관리 분야			

- (소극 요건) 금융지원이 불가한 기업들은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 결격사유 점검* 후 해당 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
 - * 재무적 결격 요건 유무는 정책금융종합지원반에서 판단하여 선정한 부처에 통보 예정

검토 주체	결격사유 점검 항목		
각 부처	①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였거나, 경영자 평판(회령, 배임 등)에 문제가 있는 경우		
	② 최근 3년간 「공정거래법」에 따른 시정조치,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		
	③ 최근 2년간 「관세법」,「외국환거래법」,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처벌받은 기업 (단, 질서벌 처벌은 제외)		
	④ 국세·관세·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기업		
	① 최근 1년내 신용유의정보(연체, 파산, 부도, 회생 등) 집중기관에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		
	② 중소·중견기업에서 제외된 경우(M&A 등으로 계열대기업 집단 편입 등), 폐업, 흡수합병 등으로 대상기업이 소멸된 경우		
정책금융 종합지원반	③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감사의견이 "한정" 이하인 경우 (단, 외부감사 전환 첫 해 한정 의견인 경우 제외)		
	④ 최근 회계연도(2023년) 전액 자본잠식인 기업		
	⑤ 최근 회계연도(2023년)상 3년 평균 매출 증감 △10% 이상인 기업		
	⑥ 최근 회계연도(2023년)상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0% 미만인 기업		

* 단, ⑤,⑥ 항목에 해당되나 '적격 투자기관'으로부터 투자유치실적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 가능 → 이 경우 투자 실적 증명을 위한 투자확인서, 주주명부 등 제출 필요

7. 선정 방법

□ 평가 방법

- ㅇ (요건 심사) 제출 서류, 신청 자격 검토 등
- (서면 평가) 혁신성,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인 기업 선정

구 분	평가 항목	평가 사항	배점
보유 기술등 혁신성 (50)	연구개발 인프라	1) 기술 개발 조직 및 개발 인력의 우수성 2)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 현황	20
	연구개발 역량	1)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* 특허권, 실용신안권, 의장권, 상표권2)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성3) 향후 핵심기술 획득 방안의 구체성과 타당성	30
	기업 성장 추이	1) 최근 3년간 매출액·수출액·영업이익률 등의 증가 여부	15
미래 성장 가능성	최근 투자 실적과 필요 자원 및 역량 확보 방안의 적극성	1) 최근 3년간 투자 실적과 향후 투자 전략 2) 성장을 위한 투자 요인과 투자확보 계획의 치밀성 및 타당성 3) 인력, 시설, 장비, 네트워크 등 필요 역량 확보 방안의 적극성 4) 자금 수요(대출, 보증, 투자) 및 시급성	20
(50)	핵심 인재 확보 및 인재 육성 적극성	1) 최근 3년간 고용 현황 2) 미래 핵심 인재 확보 및 고용 창출 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3) 핵심 인재 유지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	15
합 계 1			

□ 최종 선정

- ㅇ 요건 심사 및 서면 평가 결과를 거쳐 정책금융기관의 결격사유 심사 후 결정
- 정책금융종합지원반의 재무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서면 결과 70점 이상이어도 "선정 제외"로 분류

8. 신청 방법

□ 접수 절차

구 분	내 용	
접수 기간	▶ 2025. 2. 17. 09시 ~ 3. 14. 17시	
문의 및 접수처	 신청기업의 본사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지 권역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제출 서류 및 증빙서류 송부 (※ 11번 참조) * 접수 후 접수 결과 안내메일 순차적 회신 예정, 미회신시 문의 및 접수처로 확인 전화 필요 (* 접수 마감일 17:00 이후 접수건은 심사 제외) 	

구 분	내 용		
서식 교부	▶ 관세청, 관세청FTA포털에서 공고일로부터 서식 교부 * 관세청(https://www.customs.go.kr) * 관세청FTA포털(https://www.customs.go.kr/ftaportalkor/main.do)		
접수 절차	 ▶ 첨부된 접수 양식을 다운받아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 * '신청서', '혁신성장전략서', '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', 개인(신용)정보 제공·활용 동의서'는 hwp 파일 및 PDF 파일 모두 제출 * 증빙용 서류는 PDF 파일, 스캔본 파일로 제출(증빙 파일 오류 확인 必) * 모든 제출 서류는 제출서류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압축하여(파일명 앞에 번호 부여) 1개 파일로 송부(파일명은 '기업명'으로 기재) ▶ 권역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이메일 주소로 송부 		
유의 사항	 ▶ 접수 마감일 17:00 초과 신청건은 미접수 처리 ▶ 신청서에 기입한 담당자 이메일 및 휴대폰 번호를 통해 선정 진행 일정, 결과 발표 등의 선정 절차 안내가 제공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정보 입력 필요 ▶ 필요시 추가 서류의 온·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▶ 제출서류는 비공개 조건으로 해당 사업 관련 기관에만 공개 가능 ▶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		

□ 제출 서류

서류 번호	서류 명	파일종류	수량
(1)	혁신 프리미어 1000 신청서	hwp파일, PDF파일	각 1부
(2)	혁신성장 전략서	hwp파일, PDF파일	각 1부
(3)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증빙서류	hwp파일, PDF파일	각 1부
(4)	개인(신용)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	hwp파일, PDF파일	각 1부
(5)	최근 4개년도('20~'23)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* 재무제표의 경우, 필히 '표준재무제표증명' 또는 '재무제표 확인' 페이지를 포함 제출	PDF파일, 스캔본	각 1부
(6)	국세·관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 (법인은 법인명으로 출력)	PDF파일, 스캔본	각 1부

(※ 모든 제출 서류는 파일명에 서류 번호를 붙여 순서대로 나열하여 압축파일로 제출)

9. 선정 후 지원신청 절차

- 선정 기업은 온·오프라인을 통해 금융·비금융 지원 신청서를 접수(수시)
 - * 온라인(종합지원반 홈페이지 : www.newgi.org 접속 → 「혁신 프리미어 1000」클릭 오프라인(각 정책금융기관 영업점)

10. 기타 유의사항

- 「혁신 프리미어 1000」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이 금융지원(대출·보증)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, 선정 후 정책금융기관별 자체 기준에 따른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금융지원 여부 결정
- 선정 후 정책금융기관의 금융·비금융 지원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적극 협조 필요
- ㅇ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최종 선정 후 선정된 기업 명단은 대외 공개 원칙

11. 문의 및 접수처

ㅇ (관세청 권역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) 신청 관련 문의 및 접수

기관명	전화번호	전자우편
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	02) 510-1371~1382	seoulsupport@korea.kr
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	051) 620-6951~6957	busansupport@korea.kr
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	032) 452-3644~3645	incheonsupport@korea.kr
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	053) 230-5181~5184	daegusupport@korea.kr
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	062) 975-8192~8197	gwangjufta@korea.kr
평택세관 통관총괄과	031) 8054-7046	ptfta@korea.kr

- * 신청기업은 본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권역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 및 접수
- (정책금융기관) 금융·비금융 지원 내용 문의 및 상담

산업은행	전화번호	전자우편
정책금융기관	02-787-6916	jyohkdb@kdb.co.kr
(종합지원반)	02-787-6917	kaitou@kdb.co.kr